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최보윤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9999 발의연월일: 2025. 4. 21.

발 의 자:최보윤·김선교·서천호

강승규・김용태・서명옥

이달희 · 조배숙 · 이만희

임이자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법체계에 따르면 차별행위를 당한 자라고 하더라도 소송에서 차별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하여 패소할 경우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하게 됨. 이 때문에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은 차별행위가 있어도 소송 제기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지니게 되어 이 법의 취지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음.

이에 이 법에 근거하여 제기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에 부합하는 경우 국가가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으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48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장에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8조의2(소송비용의 특례) ① 국가는 이 법에 근거하여 제기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(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)의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과 범위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<u><신 설></u> | 제48조의2(소송비용의 특례) ① |
| | 국가는 이 법에 근거하여 제기 |
| | 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소송 |
| | 에서 패소한 당사자(국가기관 |
| | 및 지방자치단체, 「공공기관의 |
| |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|
| |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)의 |
| |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|
| | 지원할 수 있다. |
| |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|
| | 과 범위 및 절차 등은 대통령 |
| | 령으로 정한다. |